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2011. 1.



목 차

I. 승인심사 개요	3
1. 승인 대상 및 승인신청 자격	3
2. 승인 심사 주요 절차	3
3.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4
4. 기타 사항	5
II. 기본 방향	6
III.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7
1.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원칙	8
2.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9
3.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14
IV. 평가방법 관련 주요사항	15
1. 주요주주의 범위	16
2. 신청법인의 적정성 평가방안	18
3.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유지방안	20
4.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22
5. 기타 평가방법	23
[첨부]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25

I. 승인심사 개요

1. 승인 대상 및 승인신청 자격

□ 승인 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 금번 승인 대상 방송사업은 ‘중소기업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

□ 승인신청 자격

- ‘중소기업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설립예정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승인심사 주요 절차

- 신청공고 : ’11. 1. 26(수)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 신청요령 설명회 : ’11. 1. 28(금)
- 신청서류 접수 : ’11. 2. 16(수) 09:00 ~ 18:00

- 관계기관 의견 조회
 -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
- 시청자 의견청취 :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익일로부터 2주 이내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 「승인심사계획」 의결 : '11. 2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심사 실무에 관한 사항 등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 : '11. 2월 ~ 3월 초
※ 심사과정 및 이후 세부 절차는 별도 의결 예정인 승인심사계획에 포함

3 승인조건 및 승인장 교부

□ 승인조건

- 위원회는 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 조건 예시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행,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금지 및 우대주주의 지분율 유지 등을 들 수 있음

□ 승인장 교부

-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까지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함

4

기타 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신청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예를 들어, 부속서류 추가 제출, 날짜·단위·성명 등 오기·누락의 수정, 서명·날인의 보완 등)에 한하여 보정자료 제출 가능
 - ※ 단,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승인 신청서류 접수 시 조견표에 명시된 부속서류에 한함
 -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어, 주주구성의 변경 등)은 보정 불가
 - 제출서류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승인 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법인이 보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 위 보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승인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법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II. 기본 방향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
 -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결정

-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 평가방법으로 구성
 - 평가방법은 '평가요소'(세부심사항목을 세분화), '평가지표'(계량/비계량), '세부평가방법'(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평점 및 과락기준 등)으로 구성

□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 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

* 심사사항의 구성 및 배점, 심사항목의 구성은 정책방안에서 정하였음

【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 】

- ◇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 ◇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청자소비자 복지향상

III.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1.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 · 배점 원칙

- 정책방안에서 정해진 심사항목에 배점을 부여하고,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여 배점을 부여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

2.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 · 배점

- 각 심사사항 별로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을 제시

3.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20개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배점의 60%)를 적용할 심사항목 선정 원칙과 적용 심사항목을 제시

□ 심사항목 배점

- 정책방안에서 정한 심사사항별 배점과 20개 심사항목을 토대로 배점을 부여
- 심사사항 배점을 하위 심사항목 간 정책목표 관련성, 주요 내용 등을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배분

□ 세부심사항목 구성

- 2001년 홈쇼핑 PP 선정 시의 심사기준과 정책방안에서 정한 심사항목이 지향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세부심사항목을 구성
- 세부심사항목 배점 간 편차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항목을 분할 또는 통합

□ 세부심사항목 배점

- 심사항목 배점을 하위 세부심사항목 간 정책목표 관련성, 주요 내용 등을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배분
- 정책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심사항목에 속하는 세부심사항목과의 형평성을 확보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취지 및 홈쇼핑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

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3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40)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20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30)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
신청법인의 적정성 (100)	주주구성의 적정성	70
	주주구성의 건전성	30
시청자·소비자 권리 실현 방안(90)	소비자 보호계획의 우수성	60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30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90)	사업자간 공정경쟁 방안	45
	생산자 육성계획의 적정성	45

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제작계획(8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50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30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 (90)	상품 구성 계획의 우수성	60
	상품 확보 계획의 우수성	30
채널 확보계획(30)	채널 확보계획의 적정성	15
	채널 확보계획의 합리성	15

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사업추진계획 (40)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20
	마케팅 및 물류 계획의 우수성	20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40)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20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20
납입자본금 규모 (60)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60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40)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20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성 분석 (20)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20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50)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30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20

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재정적 능력 (45)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15
	부채비율(계량)	15
	총자산 증가율(계량)	15
자금출자 능력 (30)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0
	자기자본 对 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0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10
기술적 능력 (25)	방송시설 설치·운용계획	15
	방송기술 및 기타 시설확보 및 활용계획	10

마.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40)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40
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40)	유통산업 발전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40
출연금(20)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20

3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 20개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배점의 60%)를 적용할 심사항목의 선정 원칙과 적용 심사항목을 제시

□ 선정 원칙

- 정책목표를 고려, 심사항목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선정
- '신청법인의 적정성', '상품 구성 및 확보 계획', '납입 자본금 규모'는 정책방안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

□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 ⇒ 총 6개 심사항목

- 공익성 및 공적 책임 관련 ⇒ ①신청법인의 적정성, ②시청자 · 소비자 권리실현 방안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③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 ④상품구성 및 확보계획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관련 ⇒ ⑤납입 자본금 규모, ⑥경영의 투명성 · 효율성

IV. 평가방법 관련 주요사항

1. 주요주주의 범위

- 구성주주 중 주된 평가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

2. 신청법인의 적정성 평가방안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취지를 고려한 '신청법인의 적정성'(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

3.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유지방안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 구성의 변경 금지 등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

4.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 가능성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

5. 기타 평가방법

- 계량 및 비계량평가 시 평점방법, 출연금 평가방법 등을 제시

1

주요주주의 범위

- ◇ 구성주주 중 주된 평가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

□ 주요주주의 적용 영역

- 주요주주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 '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임

※ 다만, 구성주주 전체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신청법인의 적정성'임

- 주요주주는 주금 납입계약서,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재무제표·감사보고서·결산서, 신용등급,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유통산업 지원 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주요주주 이외의 구성주주는 주금납입 계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 주요주주는 승인장 교부 후 승인유효기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

□ 주요주주의 범위

-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에서 다량 보유자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

-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모두 주요주주에 해당함
-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율 합이 51% 미만일 경우, 지분 1% 이상 지분 5% 미만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지분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를 추가

※ 단, 합계가 51%까지인 주주가 복수인 경우,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1인의 주주로 하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의 합이 51% 미만인 경우에도 지분 1% 미만 주주는 포함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취지를 고려한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

가.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평가방안

□ 우대주주

-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으로서 우대받는 대상은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해당하여야 함(이하 "우대주주"라 함)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② **공공적 성격의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중 다른 법인에 출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기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

③ **중소기업 관련 민간단체** :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평가방안

-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핵심 심사항목으로 설정하고,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락 처리
 - ①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 ②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우대주주) 비율이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미만인 경우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 특별결의 요건 규정(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등을 고려하여 70% 이상으로 설정

- 최대주주가 중소기업 등 우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 법인의 적정성'(심사항목) 중 '주주구성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 배점의 30점을 부여
- 대기업 참여(1인지분 포함)에 대해서도 '주주구성의 적정성'(세부심사 항목)에서 평가

나. 기존 홈쇼핑 PP 참여 배제방안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취지와 방송의 다양성을 고려, 기존 홈쇼핑 PP의 참여 배제방안을 제시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신청법인에 기존 홈쇼핑 PP(방송법상 특수 관계자를 포함)가 지분 참여한 경우, 해당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
- 다만, 해당 홈쇼핑 PP의 출자예정금액은 신청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되, '주주구성의 건전성'(세부심사항목)에서 불이익을 부여
- 주요주주로 참여한 경우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의 세부 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의 주요주주 평가 시 최저점수를 부여
- 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도 홈쇼핑 PP가 참여한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홈쇼핑 PP를 대체한 주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승인장을 교부 받을 수 있음

3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유지방안

-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 구성의 변경 금지 등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

가. 주주구성 변경 금지방안

□ 승인 신청 후 승인 대상 사업자 선정 전 주주구성 변경

- 승인 신청서류 제출 이후 주주구성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

□ 승인 대상 사업자 선정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 변경

-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

※ 법률의 규정, 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우대주주(중소기업, 공공적 성격의 단체, 관련 민간단체)의 지분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승인장 교부 후 주주구성 변경

- 주요주주의 경우 승인장 교부 후 승인유효기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

※ 승인유효기간 5년으로 결정 시 5년간 매각금지, 승인유효기간 3년으로 결정 시 3년간 지분 매각 금지

- 또한 안정적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 유지를 위해 우대주주의 지분율을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

나.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 방지 보완

- 구성주주의 지분 처분 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 여부 등 신청법인의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 방지방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에 반영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 심사항목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 모든 구성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통해 자본금 납입 담보 방안을 비계량으로 평가
 - ※ 단,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의사결정 기구의 결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을 평가

□ 최초 납입자본금의 건전성 평가방법

-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
 -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란 일정 기간 후에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buy-back)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행위로 보기 어려움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5

기타 평가방법

□ 계량평가 평점방법

- 자료를 미제출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산출불능인 경우 최저점수로 처리

※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평균치의 80%를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적용

-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비계량평가 평점방법

-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구분하여 평점 부여

등급	의미	평점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우	우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미	보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양	미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균 산정 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의견청취

-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실현의지 판단,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예정자 포함),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출연금 평가방법

-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 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법

- 법인격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단체 자체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함
 -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
-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신청법인의 구성주주로 간주함

【첨부】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3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1.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40점)	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 방송법 제5조(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구체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편성책임자·최대주주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의지 등을 평가
	1-1-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소개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캠페인, 재난방송 포함) 편성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 ▪ 방송언어 순화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소개 내용의 객관성 유지 등 상품소개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 ◦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및 일간신문 구독률(시청점유율로 환산)을 대상으로 산정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30점)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점)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계획의 비전 및 목표 등의 타당성	비계량	
		▪ 주요주주의 공익·자선사업 등 사회적 기여실적		○ 지난 3년간(2008, 2009, 2010년)의 사회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
		▪ 신청법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의 우수성·구체성		○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 실천방안 등을 평가 ※ 기업 등 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윤리적 행동·법치주의 존중 등 7개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제시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일자리 창출 계획, 고용규모(직접 고용) 및 그 산정 근거 등을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점)	▪ 주요주주의 지역적 기여실적	비계량	○ 지난 3년간(2008, 2009, 2010년)의 지역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
		▪ 신청법인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 지역적 기여계획의 우수성·구체성		○ 지역중소기업 지원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을 평가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점)	▪ 주요주주의 문화 보존·발전 등에 대한 기여실적	비계량	
		▪ 신청법인의 문화적 기여계획의 우수성·구체성		○ 지난 3년간(2008, 2009, 2010년)의 문화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100점)	1-3-1. 주주구성의 적정성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구성의 다양성 및 정책목표 부합여부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구성의 다양성, 구성주주의 정책목표 실현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대기업 참여 여부(1인지분 포함)를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법인 단독 참여 시 해당 세부심사항목 0점 ※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우대주주) 비율이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미만인 경우 해당 세부심사항목 0점 ○ 주요주주 등의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구성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처분 시 신청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마련 여부 등을 평가 <p>※ 최대주주가 우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부심사항목에 대해 30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공익적 기여 가능성 있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구성 여부 		
	1-3-2. 주주구성의 건전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대표자·편성책임자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방송, 통신, 商事, 금융, 조세, 노무, 공정거래 등) 법령 준수여부를 사안의 경증·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기간은 최근 3년(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으로 함 ※ 관계 기관 의견 조회는 확정된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홈쇼핑 PP의 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홈쇼핑 PP(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 참여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4. 시청자· 소비자 권익실현 방안 (90점)	1-4-1. 소비자 보호 계획의 우수성 (60점)	▪ 시청자·소비자 권리실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	비계량	
		▪ 개인정보보호계획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리감독 주체, 해킹 등 보안 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계획의 체계성·적정성을 평가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계획의 우수성		○ 사전품질검사시스템, 자율심의제, 공인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우수성을 평가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계획의 우수성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정보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을 평가
	1-4-2.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30점)	▪ 자체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적정성 (방송법 제86조)		○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계획, 자체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 시청자 불만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5.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 (90점)	1-5-1. 사업자간 공정경쟁 방안(45점)	▪ 홈쇼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및 중소 기업 동반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여부 및 적정성	비계량	
		▪ 홈쇼핑 PP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 담합 등 홈쇼핑 PP간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 홈쇼핑 PP와 유통·납품업체간 공정 거래 관행 정착방안의 적정성·구체성		○ 공정하고,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납품업체 와의 표준거래계약서 운영계획(체감수수료 인하 및 거래조건 개선방안 등을 포함)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1-5-2. 생산자 육성계획의 적정성 (45점)	▪ 중소기업 등 생산자 육성지원계획의 우수성·구체성·실현 가능성	비계량	○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판로확대지원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 대기업과의 판매수수료 부당 차별 금지 등 중소 기업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마련을 위한 계획의 우수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중소기업 등 생산자 및 유통업체의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생산자 및 유통업체 등의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 하여 평가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1.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제작계획 (80점)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의 기본 방향 및 목표의 타당성·우수성·실현 가능성 	비계량	
	2-1-2.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쇼핑방송 분야별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적절성·실현 가능성 ▪ 전체 편성계획과의 정합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존 홈쇼핑 방송과 차별화된 제작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주체별(대·중소기업 등), 상품유형별, 지역상품별 편성계획의 적정성·우수성 등을 평가 ○ 제작계획의 전체 편성계획, 소요비용 및 제작인력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특성을 반영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차별화 방안의 우수성·구체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2. 상품 구성 및 확보계획 (90점)	2-2-1. 상품 구성계획의 우수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수급계획의 구체성 및 전체 편성 계획과의 정합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및 편성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 ○ 소비자·생산자 수요조사에 따른 상품 구성계획의 적정성·우수성 등을 평가 <p>※ 전체 홈쇼핑 방송편성시간 및 방송법 상 주시청 시간대 기준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편성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해당 세부심사항목 0점</p>
	2-2-2. 상품 확보계획의 우수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중소기업 제품 구성의 다양성 등 상품 구성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중소기업상품 발굴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중소기업상품 구성 다양화를 위한 신규 입점 중소기업 및 상품구성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구성계획에 따른 상품 조달 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구성계획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발굴 계획의 우수성·타당성·실현 가능성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정·투명한 선정 및 확보 방안의 우수성·타당성·실현 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3. 채널 확보계획 (30점)	2-3-1. 채널 확보 계획의 적정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O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 송출매체별 송출협약 체결 여부 및 내용을 평가 o 송출매체별 중·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채널확보를 위한 전략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2-3-2. 채널 확보 계획의 합리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플랫폼 진출계획의 구체성·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기타 플랫폼에 대한 진출계획의 구체성·우수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공급계약 등 송출조건의 합리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송출계약조건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o 송출수수료 비용의 중소기업 납품업체로의 전가 방지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1. 사업 추진계획 (40점)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시장전망의 합리성 및 목표점유율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기업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의 적정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시장 등의 분석 및 예측방법, 추정재무제표 (매출액 등)와의 정합성 등을 평가
	3-1-2. 마케팅 및 물류 계획의 우수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계획의 차별성·타당성 ▪ 물류 계획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단계 등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40점)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조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인력구성의 적정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과 사업추진계획 등의 정합성 등을 평가 ◦ 분야별 소요인력 산정, 배치방안(직급별, 정규직·비정규직구분) 등을 평가 ◦ 추정재무제표(인건비 등)와의 정합성을 평가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충원 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교육투자규모 및 교육의 종류, 방법 등을 평가 ◦ 추정재무제표(교육훈련비 등)와의 정합성 등을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3-3. 납입자본금 규모 (60점)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60점)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최초 납입 자본금 금액 (계량)	<p><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는 평가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배점의 100% - 1,000억원 미만의 경우, 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40점)	3-4-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납입자본금 구성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주요주주의 이사회 결의서,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출자 예정 금액의 실현가능성을 평가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기속력을 평가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신청법인의 자금조달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 자금조달계획을 평가하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 - 영업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수익 추정방법의 적정성, 시장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 재무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차입 약정서 등을 평가
	3-4-2.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자금의 산출의 적정성 ▪ 제작비 등 경상운영자금 산출의 적정성 ▪ 기타자금 산출의 적정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과의 정합성을 평가 ○ 자금운영계획의 산출 가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5. 사업성 분석 (20점)	3-5-1.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20점)	▪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구성내역 등을 평가 ◦ 추정재무제표는 1차년도는 분기별로, 2차년도 이후는 연도별로 평가 ◦ 추정재무제표 금액 추정근거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F 방법(NPV, IRR 등)에 의한 재무적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을 등을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50점)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30점)	▪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 ◦ 대표이사 선임절차의 투명성, 적정성 등을 평가
		▪ 경영감시기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방안의 실효성 등을 평가
		▪ 기타 경영투명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주주 보호 계획, 회계부분의 투명성 확보방안,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간의 부당거래방지 방안 등을 평가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20점)	▪ 경영효율화에 대한 전략 및 비전 등의 적정성	비계량	
		▪ 대표자 등 임원, 편성책임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의 관련업계 경력, 전문성, 주요 공헌 정도 등을 평가
		▪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 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1. 재정적 능력 (45점)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 ※ 신설법인의 경우 1기 사업연도 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포함) 기초자기자본으로 적용 	자기자본 순이익률 (계량)	<p><input type="checkbox"/> 평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9년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대분류 기준 14개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의 연도별 평균(X) 및 표준편차(σ)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도의 지표값(A)에 대해 평가 ○ 평가기간 : 최근 3년(2009년, 2008년, 2007년) ○ 평가대상 : 주요주주 <p><input type="checkbox"/>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으로 환산 ○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회사의 지표 값 : A - $A > X + 2\sigma$: 최저점(40점) - $A < X - 2\sigma$: 최고점(100점) - 평균(X)로부터 2σ 범위 내 : 취득점수(Y) = $70 + 60 \times (X-A)/4\sigma$
	4-1-2. 부채비율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 ※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잔액 	부채비율 (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 평가대상회사의 지표 값 : A - $A < X - 2\sigma$: 최저점(40점) - $A > X + 2\sigma$: 최고점(100점) - 평균(X)로부터 2σ 범위 내 기업의 취득점수(Y) = $70 + 60 \times (A-X)/4\sigma$

(다음 페이지 계속)

심사항목	세부심사 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1. 재정적 능력	4-1-3. 총자산 증가율 (15점)	▪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times 100] - 100$	총자산 증가율 (계량)	<p>※ 3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평균치의 80%를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적용 <p>※ 총자산증가율에 한하여, 4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연도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설립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 평균치의 80%를 미제출 연도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적용 <p>※ 신청법인이 산출불능으로 제시한 자료는 최저점수 평가</p> <p>※ 주요주주로 참여한 기존 홈쇼핑 PP(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p> <p>※ 외국인 주주 재무제표에 표시된 외화표시 금액을 원화표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적용할 환율은 각 사업연도말 매매기준율을 적용</p> <p>※ 평가대상 재무제표가 다음연도에 재작성 된 경우 재작성 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p> <p>□ 가중치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 연도부터 5 : 3 : 2 ○ 주요주주 간 가중치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 <p>□ 점수계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로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주주별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심사항목	세부심사 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30점)	4-2-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 상품) <small>對</small> 출자금액의 적정성 (10점)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출자금액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 상품) /출자금액 (계량)	<p><input type="checkbox"/> 평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주주 ○ 평가기간 : 2009 회계연도 말 ○ 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주주의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p><input type="checkbox"/>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으로 환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미만 : 최저점(40점) - 50% 이상 ~ 60% 미만 : 50점 - 60% 이상 ~ 70% 미만 : 60점 - 70% 이상 ~ 80% 미만 : 70점 - 80% 이상 ~ 90% 미만 : 80점 - 90% 이상 ~ 100% 미만 : 90점 - 100% 이상 : 최고점(100점) ○ 자기자본 / 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미만 : 최저점(40점) - 100% 이상 ~ 150% 미만 : 50점 - 150% 이상 ~ 200% 미만 : 60점 - 200% 이상 ~ 250% 미만 : 70점 - 250% 이상 ~ 300% 미만 : 80점 - 300% 이상 ~ 350% 미만 : 90점 - 350% 이상 : 최고점(100점)

(다음 페이지 계속)

심사항목	세부심사 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4-2-2. 자기자본 對 출자금액의 적정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출자금액 <p>※ 자기자본 = 자산 - 부채</p>	자기자본/ 출자금액 (계량)	<p>※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주요주주는 최저점수 평가</p> <p>※ 제출한 자료로 산출이 불능한 경우 최저점수 평가</p> <p>※ 주요주주로 참여한 기존 홈쇼핑 PP(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p> <p><input type="checkbox"/> 가중치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 <p><input type="checkbox"/> 점수계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심사항목	세부심사 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4-2-3.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10점)	▪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계량)	<p><input type="checkbox"/> 평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주요주주 ○ 평가기준 : 신청접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등급(회사채) 평가 <p><input type="checkbox"/> 배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용등급</th> <th>배점비중</th> <th>신용등급</th> <th>배점비중</th> </tr> </thead> <tbody> <tr><td>AAA</td><td>100%</td><td>BB+</td><td>68.42%</td></tr> <tr><td>AA+</td><td>96.84%</td><td>BB</td><td>65.26%</td></tr> <tr><td>AA</td><td>93.68%</td><td>BB-</td><td>62.11%</td></tr> <tr><td>AA-</td><td>90.53%</td><td>B+</td><td>58.95%</td></tr> <tr><td>A+</td><td>87.37%</td><td>B</td><td>55.79%</td></tr> <tr><td>A</td><td>84.21%</td><td>B-</td><td>52.63%</td></tr> <tr><td>A-</td><td>81.05%</td><td>CCC+, CCC, CCC-</td><td>49.47%</td></tr> <tr><td>BBB+</td><td>77.89%</td><td>CC</td><td>46.32%</td></tr> <tr><td>BBB</td><td>74.74%</td><td>C</td><td>43.16%</td></tr> <tr><td>BBB-</td><td>71.58%</td><td>D</td><td>40.00%</td></tr> </tbody> </table> <p>※ 신용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저점수 평가</p> <p>※ 주요주주로 참여한 기준 홈쇼핑 PP(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최저 점수 평가</p> <p><input type="checkbox"/> 가중치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 <p><input type="checkbox"/> 점수계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신용등급	배점비중	신용등급	배점비중	AAA	100%	BB+	68.42%	AA+	96.84%	BB	65.26%	AA	93.68%	BB-	62.11%	AA-	90.53%	B+	58.95%	A+	87.37%	B	55.79%	A	84.21%	B-	52.63%	A-	81.05%	CCC+, CCC, CCC-	49.47%	BBB+	77.89%	CC	46.32%	BBB	74.74%	C	43.16%	BBB-	71.58%	D	40.00%		
신용등급	배점비중	신용등급	배점비중																																															
AAA	100%	BB+	68.42%																																															
AA+	96.84%	BB	65.26%																																															
AA	93.68%	BB-	62.11%																																															
AA-	90.53%	B+	58.95%																																															
A+	87.37%	B	55.79%																																															
A	84.21%	B-	52.63%																																															
A-	81.05%	CCC+, CCC, CCC-	49.47%																																															
BBB+	77.89%	CC	46.32%																																															
BBB	74.74%	C	43.16%																																															
BBB-	71.58%	D	40.00%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4-3. 기술적 능력 (25점)	4-3-1. 방송시설 설치·운용계획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 운영에 적합한 방송제작 및 편집 관련 시설설치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증빙서류(설비투자계약서 등)를 통해 설비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편성 및 제작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 자금운영계획(시설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4-3-2. 방송기술 및 기타 시설 확보·활용 계획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편집 기술의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 ▪ 홈쇼핑 사업운영에 필요한 콜센터, 전자상거래시스템 등 확보 및 운용 계획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구축계획, 사업추진계획, 전문 인력확보계획 및 소비자보호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5.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5-1. 방송·콘텐츠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0점)	5-1-1.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40점)	▪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차별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주주의 지난 3년간(2008, 2009, 2010년)의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실적을 평가 ○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계획의 우수성·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방송장비,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계획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기기산업 육성·지원계획, 방송 관련 연구개발 지원계획, 교육·연수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평가
5-2. 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0점)	5-2-1. 유통산업 발전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40점)	▪ 중소기업 지원 등 유통산업에 대한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주주의 지난 3년간(2008, 2009, 2010년)의 중소기업 지원 등 유통산업 기여실적을 평가 ○ 홈쇼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유통분야 지원을 위한 홈쇼핑 PP 간 공동사업계획 등 유통산업 기여 계획의 우수성·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홈쇼핑 방송산업 관련 비영리단체 출연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쇼핑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비영리단체 출연 등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5-3. 출연금 (20점)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20점)	▪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출연금 규모 (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 원 이상인 경우 배점의 100% ○ 50억 원 미만인 경우 배점의 0% <p>※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p>